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희걸 의원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양천 제4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희걸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
니다.

서울시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동차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각종 인허가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낮은 금리 등으로 매입 즉시 매도되고 있으나, 매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의 경우, 만기환급까지 거치기간이 7년으로 장기간이어서 만기일을 망각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만기가 도래되는 채권에 대하여 상환공고 또는 상환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나 단어군을 간결하게 줄여 표현하는 약칭은 입법기술상 목적규정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목적규정에서 사용된 약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본 개정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철도채권에 대한 상환공고 또는 상환안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